

국가교육위원회 제57차 회의

의안번호	제2025-04호	심의 · 의결 사항
심의·의결 일자	2025. 7. 18.	
공개여부	공개	

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(안)

제 출 자	국가교육위원회 위원장
제출일자	2025. 7. 18.

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 등에 관한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통보(안)

I. 배경 및 경과

□ 배경

- 「학교보건법」 일부 개정^{*}(개정 '25.3.18. 시행 '25.9.19.)에 따라 교육부는 후속 법령개정^{**}을 위해 국교위에 사전협의 요청('25.5.19.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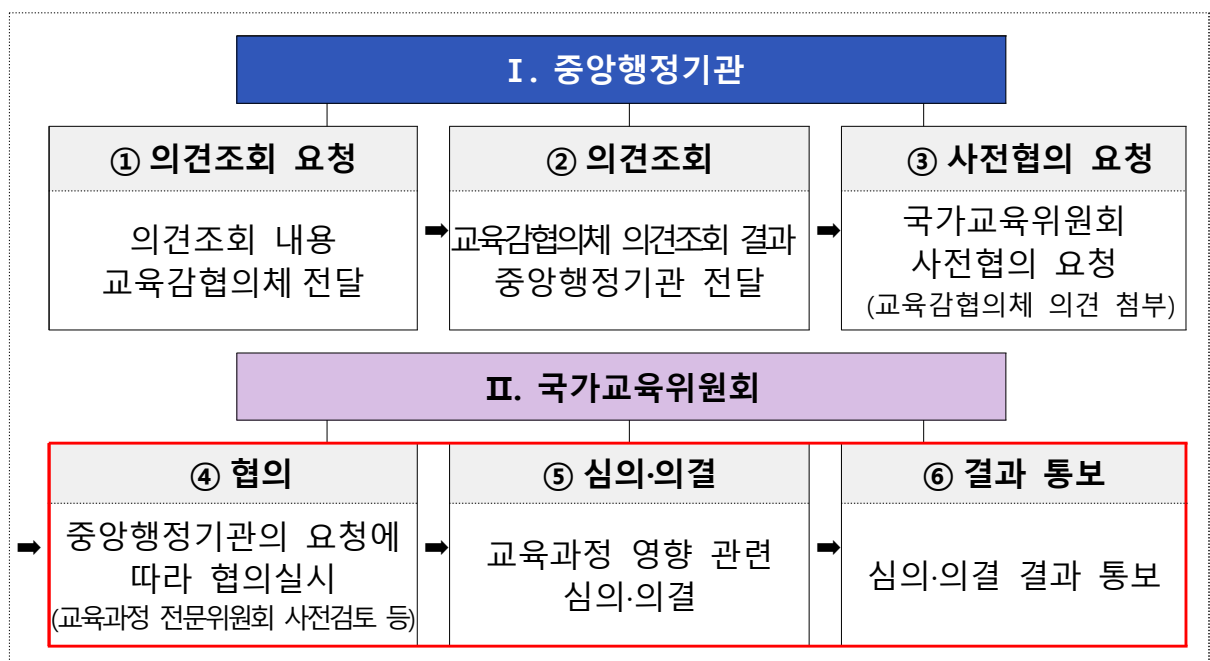
* 「학교보건법」제9조의3(마약류 중독·오남용 예방교육)

** 「같은 법 시행령」 제22조의4(마약류 중독·오남용 예방교육 추진계획)
「같은 법 시행규칙」 제10조의3(마약류 중독·오남용 예방교육 실시)

※ 【근거 법령】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3조의2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43조의2

-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, 교육횟수, 교육시간, 결과 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교육과정에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함

□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절차



※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함

□ 경과

○ 교육부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요청('25.5.19.)

【교육부 요청 사항】

①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

- (교육내용 설정) 교육부장관은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 학교급별 주요 교육내용을 포함(안 제22조의4제3항)하여 **매 학년도 시작 전까지** 마련(안 제22조의4제1항)

②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

- (실시 횟수) 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조에 따른 학교는 마약중독예방교육을 **매년** 실시(안 제10조의3제1항)
- (실시 방법) 학교는 마약중독예방교육을 **교육과정과 연계·통합하여** 실시(안 제10조의3제1항)하고, **교과와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**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(안 제10조의3제2항)

- 교육감협의체 서면 의견

※ 교육부는 「초중등교육법」제43조의2제2항에 따라 교육감협의체 의견을 붙여 사전협의 요청

①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 (안 제22조의4)

- (교육내용 설정) 별도 의견 없음

②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 (안 제10조의3)

- (실시 횟수) 마약중독예방교육 횟수* 를 ‘매 학기’ 로 규정할 경우, 학교 교육과정 운영의 자율성을 제약할 수 있으므로 ‘매년’ 으로 수정 필요
* 現 「학교안전교육 실시 기준 등에 관한 고시」에 따라 매년 초(5시간), 중(6시간), 고(7시간) 실시 중
- (실시 방법) 현재 학교에서의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육부 지침에 따라 교육과정과 연계·통합하여 실시하고 있는바, 관련 교육을 ‘교육과정과 연계·통합하여 실시’ 하고 ‘교과 및 창의적 체험활동과 연계하여 다양한’ 방법으로 실시하도록 수정 필요

○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사전검토 실시(7.7.~ 7.15.)

【전문위 검토의견】

①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

- 교육 설정(안 제22조의4제1항):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는 학교 교육 계획의 안정적 수립을 위해 ‘매 학년도 시작 전’ 을 ‘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’ 로 수정 필요

②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

- 실시 횟수(안 제10조의3제1항): 교육감협의체 의견과 동일
- 실시 방법(안 제10조의3제2항): 학교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탄력적 편성·운영이 가능하도록 ‘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’ 을 ‘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’ 으로 수정 필요

③ 기타

- 법정 의무교육 관련 △교육과정 , △지원 체계 등 제도 개선 필요성에 대한 의견 제시

II. 심의 · 의결 사항

- 교육부의 법령개정 관련 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 요청 사항(접수 번호 제2025-1호)에 대한 **심의 · 의결** 후 해당 기관에 의결사항 통보

< 교육부 요청사항에 대한 통보(안) >

【검토의견】

① 「학교보건법 시행령」

- 교육내용 설정(안 제22조의4제1항)의 경우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 수립 시기는 학교교육계획의 안정적 수립을 위해 ‘매 학년도 시작 전’을 ‘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’로 수정* 필요

* [수정안]제22조의4제1항: 교육부장관은 법 제9조의3제5항에 따른 마약류에 대한 마약중독예방교육 추진계획을 ~~매 학년도 시작~~ **계획 시행 전년도 12월 31일까지** 수립해야 한다.

② 「학교보건법 시행규칙」

- 실시 횟수(안 제10조의3제1항)에 관한 사항은 교육감협의체와 의견 동일
- 실시 방법(안 제10조의3제2항)의 경우 학교 교육활동 전반에 걸쳐 탄력적 편성 · 운영이 가능하도록 ‘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’을 ‘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등’으로 수정* 필요

* [수정안]제10조의3제2항: 제1항에 따른 마약중독예방교육은 교과 또는 창의적 체험활동 **등**과 연계하여 다양한 방법으로 실시하여야 한다.

【기타 의견】

- 국가 · 사회적 변화와 요구에 따른 법정 의무 교육 증가가 학교의 전문성, 자율성 등에 기반한 학교교육과정 운영에 영향을 준다는 측면에서 우려가 있으며, 법정 의무 교육 관련 교육과정, 지원 체계 등 다양한 측면에서의 제도적 개선 검토가 지속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됨

III. 향후 일정(안)

- 국교위 심의 · 의결 결과 통보(수신처: 교육부, '25. 7월 중)

※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 · 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함

- ▶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제43조의2제3항: 요청일('25. 5. 19.)로부터 90일 이내 관련 내용 심의·의결 결과 통보 (부득이한 경우 60일 이내 범위에서 기간 연장 가능)

□ 「초·중등교육법」 제23조의2(신설 '22.10.18, 시행 '23.4.19.)

제23조의2(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23조에 따른 교육과정에 소관 법령에 따라 교육실시, 교육횟수, 교육시간, 결과보고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하거나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사전에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하여야 한다.

□ 「초·중등교육법 시행령」 제43조의2(신설 '23.4.11.)

제43조의2(교육과정 영향 사전협의의 범위 및 방법 등) ①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법 제23조의2제1항에 따라 교육과정에 교육실시 등이 의무적으로 부과되는 법정교육을 반영하는 내용의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법령안을 입법예고하기 전에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해서 국가교육위원회와 협의해야 한다.

1. 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
2. 법정교육 횟수 및 시간
3. 법정교육 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

②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라 국가교육위원회에 협의를 요청하기 전에 같은 항 각 호의 사항에 대해 「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」 제42조제1항에 따른 교육감협의체의 의견을 서면으로 들어야 한다.

③ 국가교육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협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심의·의결 결과를 협의를 요청한 기관에 통보해야 한다. 다만,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에 심의·의결하지 못했을 때에는 6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④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제3항에 따른 국가교육위원회의 심의·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한다.

I. 중앙 행정 기관	절차	내용
	① 의견조회 요청	○ 의견조회 요청서 작성 - 해당 법령이 학교 교육과정에 영향을 주는 사항을 중심으로 중앙행정기관이 의견조회 요청서 작성 ※ 【의견조회 내용】 ①법정교육 내용 및 방법 ②교육 횟수 및 시간 ③결과보고 시기 및 방법 등 학교 교육과정 편성에 영향을 주는 사항 ○ 교육감협의체에 의견조회 요청(공문)
	② 의견조회	○ 교육감협의체는 관련 법령 제·개정안에 대한 교육과정 영향 관련 의견제출
	③ 사전협의 요청	○ 사전협의 요청서, 교육감협의체 검토의견, 기타 참고자료 등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국교위에 사전협의 요청(공문) ※ 【국교위 사무처】 중앙행정기관 장의 사전협의 요청 요건 및 내용 검토
II. 국 교 위	④ 협의	○ 국가교육위원회는 제·개정 법령의 중요도 등을 고려하여 중앙행정기관 요청에 따라 협의 실시 ※ 국가교육과정 전문위원회 등 사전검토 실시
	⑤ 심의·의결	○ 교육과정 영향 관련 국교위 심의·의결
	⑥ 결과 통보	○ 국가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결과를 중앙행정기관 장에게 통보 ※ 협의 요청이 있는 날부터 90일 이내 통보, 부득이한 경우 60일 연장 가능

※ 중앙행정기관의 장은 국가교육위원회 심의·의결 결과를 입법예고하는 법령안에 반영하여야 함

※ 【근거법령】「초·중등교육법」제23조의2 및 「같은 법 시행령」제43조의2